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획재정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제금융심의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3. 9. ~ 3. 1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기획재정부령 제 호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2조제1항 중 “재정성과심의관, 국유재산심의관 및 국제금융심의관”
을 “재정성과심의관 및 국유재산심의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 ① 「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9조에서 “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” 란 재정관리관, 감사관, 민생경 제정책관, <u>재정성과심의관, 국 유재산심의관 및 국제금융심의 관</u> 을 말한다. ② 삭 제 ③ (생 략)	제22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재정성과심의관 및 국 유재산심의관</u>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